

【 16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4. 24

제출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 상시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면제하는 규정등을 신설하고, 군세감면조례증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코자 함.

□ 주요골자

- 가.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증 부속토지의 부분을 “건축물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개정함(안 제11조 제1항)
- 나. 개발제한구역내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할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함.(안 제11조 제2항)
-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증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12조)
- 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 (안 제12조의2)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를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 제1항 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재래시장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 .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13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당해 사업 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p>

현 행	개 정 안
	을 연은 취락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
	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
	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 .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	-----
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	-----
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	-----
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	-----
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
사용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	-----
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	-----
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제183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	-----
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1,000분의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	-----
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
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
	----- 사용승인일까지 -----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신 설】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p> <p>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p> <p>2. 시장재개발·재건축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p>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송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①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동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	승인
2. (생략)	
3.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 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

현 행	개 정 안
	<p>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u>추진주체 및 참가업체</u></p>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 6 편 재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감면조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9 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 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와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축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0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 4 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반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

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 공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3.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4조(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의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

“세계속에 우뚝솟은 우리 경기도”
경 기 도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 (0331) 249-2311 / 담당자 김민경

문서번호 세정 13400 - 305

시행일자 1997. 2. 5. (년)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선 결		<i>02-677-2222</i>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i>1997. 2. 5. 10:00</i>	결 재	<i>2304 (d2)</i>
처 리 과	번호		공	
담 당 자			람	

제목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안) 시달

1. 내무부 세제 13400-434 ('96. 12. 30) 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 상시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른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면제하는 규정의 신설등 현행 시군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따로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결등 제반절차를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경 기 도

[내무국장전경]



○○시 (군)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시 (군) 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 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한한다)에"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 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법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 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하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제9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 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p> <p>1. ~ 4. (생 략)</p> <p>< 신 설 ></p>	<p>// 제9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p> <p>- - - - -</p> <p>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p>

현 행	개 정 안
	<p>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p>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등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p>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p> <p>- - - - - 사용</p> <p>승인일까지 - - - - -</p> <p>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 - - - -</p>

현 행	기 정 안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 용 부동산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추징한다. ②(생 략)	- - - - - - - - - - - - - - - 사용승인일부터 - - - - - - - - - - ②(현행과 같음)
제11조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제11조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① - - - - - - 승인을 받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p>	<p>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 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 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p>
<p>4. (생 략)</p>	<p>4. (현행과 같음)</p>
<p>< 신 설 ></p>	<p>제17조의2(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 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 한다.</p> <p>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p>

현 행	개 정 안
	<p>2. 시장재개발 ·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 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 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 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 하는 자</p>